

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

- 펀드명 : 하나UBS Euro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펀드명	하나UBS Euro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	하나UBS <u>Europe</u>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나UBS Euro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(자투자신탁)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. 종류 C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. 종류 C2 수익증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기구 나. 법인세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 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나UBS Europe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(자투자신탁)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. 종류 C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. 종류 C2 수익증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기구 나. 법인세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

	<p>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인 경우</p> <p>다.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하나UBS Euro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인 경우</p> <p>다.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하나UBS Europe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제16조(투자 목적)</p>	<p>이 투자신탁은 <u>유로지역(이하 유로통화 가입국을 말한다)</u>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<u>유럽지역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</u>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18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“하나UBS Euro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”</u>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“하나UBS Europe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”</u>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</p>

	<p>다)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 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 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예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 서 10%를 초과할 수 있 다.</p>	<p>이하 같다)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 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 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예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 서 10%를 초과할 수 있 다.</p>
<p>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 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 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 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 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 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 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 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 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 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 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<u>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 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</u>

	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<u>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</u>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부 칙	(신 설)	이 신탁계약서의 변경사항은 2010년 7월 1일로 한다.

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

- 펀드명 : 하나UBS Euro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펀드명	하나UBS Euro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	하나UBS <u>Europe</u>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나UBS Euro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모자형(모투자신탁) <p>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하나UBS Euro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</u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자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자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나UBS Europe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모자형(모투자신탁) <p>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하나UBS Europe 증권 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]</u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자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자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제16조(투자 목적)	이 투자신탁은 <u>유로지역(이하 유로통화 가입국을 말한다)</u>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<u>유럽지역 국가의 주식을</u>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p>제17조(투자 대상자산 등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목의 주식(이하 “유럽주식”이라 하며,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.)</p> <p>가. 유로지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</p> <p>나. 주요 수익이 유로 지역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목의 주식(이하 “유럽주식”이라 하며,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.)</p> <p>가. <u>유럽지역</u>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</p> <p>나. 주요 수익이 <u>유럽 지역</u>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</p>
<p>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</p>

	<p>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</p>	<p>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<u>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<u>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</u></p>
--	--	--

	<p>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부 칙</p>	<p>(신 설)</p>	<p>이 신탁계약서의 변경사항은 2010년 7월 1일로 한다.</p>